

2021. 9.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목 차

1. 업무 매뉴얼 개요

가. 목적	1
나. 적용범위	1
다. 용어의 정의	1

2.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2
나. 추진절차	2

3.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가. 사업계획의 수립	4
나. 사업공고	4

4. 사업 신청 및 자격제한

가. 사업 신청	5
나. 지원 제외사항	7

5. 지원 대상 선정

가. 사업선정 방식	8
나. 선정결과 통보	8

6. 사업 관리

가.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10
나. 관리 및 배상책임	10

[별표·별지 서식]	11
-------------------------	-----------

1. 업무 매뉴얼 개요

가. 목적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이하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이라 한다)은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에 대해, 국내·외 물기술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신뢰를 향상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 업무 매뉴얼은 경기도 물기업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업 진행 순서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원사업”이란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을 말한다.
- 2) “관리기관”이란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를 말한다.
- 3) “참여기업”이란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 4) “선정기업”이란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으로 인·검증 취득완료, 지원금 수령, 사업 만족도 설문 및 기타서류 제출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인·검증 지원비용”이란 인·검증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등을 말한다.
- 6) “해외 인·검증”이란 “국가별 해외 인증 지원범위[별표 2]”에 제시된 인증을 말한다.

2.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지원 사업의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 재정 지원
- 관리기관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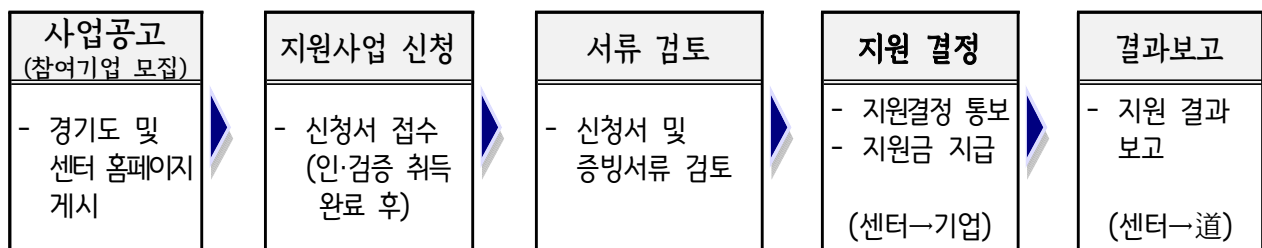
2)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 사업 세부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 지원금 지급·관리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참여기업

- 물기술 인·검증 취득완료 후 지원신청
- 자료 제출 및 결과보고 작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나. 추진절차



1) 관리기관은 공고 전산망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물기업을 모집한다.

2) 국내·외 인·검증취득 완료 및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물기업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범위의 국내·외 인증취득 여부(당해연도 기준) 등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물기술 인·검증 취득 후 사업신청을 해야 함(지원금 사후지급)

- 4) 관리기관은 서류검토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5) 관리기관은 3), 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정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업은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6)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되었거나 기한내 인증 취득 완료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3.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가. 사업계획의 수립

- 1) 관리기관은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받아야 한다.
- 2) 세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사업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사업 소요예산 등
- 3)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다만, 사업비 세목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승인 없이 변경 가능

나. 사업공고

- 1) 관리기관은 누리집(gwisc.or.kr) 등에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 2) 공고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 신청자격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지원내용
 - 진행절차
 - 신청 및 제출서류
 - 지원대상 선정
 - 사업진행 관리 등
- 3) 경기도는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공고내용을 누리집(gg.go.kr) 등에 게시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4. 사업 신청 및 자격제한

가. 사업 신청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누리집 또는 이메일)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관련 인·검증을 당해연도에 취득한 기업
- 2) 지원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 3) 지원내용 : 경기도 물기업의 제품/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지원

4) 자격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5) 지원규모 : 연간 8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7백만 원 또는 3백만 원 한도로 경기도
예산범위 내 기업당 1개 제품/기술 1분야에 한해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6) 지원비율 : 인·검증 비용 총액의 8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등) 이내 지원

- (국내) 기업 당 최대 3백만 원 한도

- (해외) 기업 당 최대 7백만 원 한도

구 분	지원방법
국내 인·검증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지원범위 : 인·검증 취득비용, 시험비용 중소기업(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견기업(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 지급방법 : 사후지급
해외 인·검증 지원	- 기업당 최대 700만원 - 지원범위 : 인증 직접비(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중소기업(총액의 80%, 나머지 자부담) 중견기업(총액의 50%, 나머지 자부담) - 지급방법 : 사후지급

7) 지원분야 : 제품·기술의 성능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국내·외 인·검증

-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지원범위 [별표 1~2]

8) 지원비용 :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인·검증 신청비, 심사비*, 시험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해외의 경우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
(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성적서 발급비는 평가 중 소요되는 시험비로서 인·검증 결과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

9) 지원방법 :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완료 후 신청(선 취득 후 지원)

10)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 등본)
-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증취득 결과물(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목록[별지 2호] 및 소요비용 명세서
 - ※ 인증신청비/시험비/공장심사비 항목 등 해당 증빙 첨부
- 기업 소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별지 3호]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4~5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별지 제6호]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별지 7호] ※ 해당사항 시
- 기타 인증 취득 관련 비용 명세서 등 증빙서류(미제출 시 불인정)
 - ※ 별도 편철하여 제출

나. 지원 제외사항

1) 신청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동 사업과 유사한 타 기관 지원사업으로부터 동일한 기술(제품)의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

2)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지원 대상 선정

가. 사업선정 방식

- 1) 관리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취득 여부,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2) 지원결정(액)은 선정 검토 과정에서 기업에서 지원 신청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 통보

- 1) 관리기관은 서류 검토 결과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하고, 즉시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2) 관리기관은 검토결과 선정기업이 제출한 신청금액 및 완료보고서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 3) 경기도는 지원결정 기업에 대해 결격사유 사실조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5.>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4)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완료보고서의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완료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5) 지원결정 통보 후 선정된 기업에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기업명 법인 계좌)
-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등에 대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비용 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
-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 증빙자료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지출 확인용)
-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별지 8호] 1부

6. 사업 관리

가. 사업 관리 및 사업비 집행

- 1) 선정기업은 인증 취득에 소요된 비용(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으로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류 검토 결과 이상 없을 시 선정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2) 선정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한다.
- 3) 비용관련 서류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 증빙으로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한다. [별지 7호]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시

2014.7.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이를 미사용할 경우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 후 첨부

나. 관리 및 배상책임

- 1) 선정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지원금의 교부 및 집행,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 3) 선정기업은 물기술 인증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별표·별지 서식

(목 록)

구 분	연번	서 식 명	PAGE
지원범위 (국내/국외)	별표 1	국내 인·검증 지원범위	12
	별표 2	해외 인·검증 지원범위	13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별지 1호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신청서	19
	별지 2호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목록	20
	별지 3호	기업소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21
	별지 4호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22
	별지 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23
	별지 6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4
	별지 7호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25
지원결정 후 제출서류	별지 8호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26

< 별표 1 >

국내 인·검증 지원범위

연번	인증명	마크	인증분야	운영 및 발급기관
1	신기술인증(NET)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건설 등 신기술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신제품인증(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성능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확보 및 증명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계약 체결 자격취득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발급)
4	우수조달제품		중소·벤처기업의 생산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품질이 우수한제품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조달청(발급)
5	환경표지		제품 전과정(생산, 유통, 사용,폐기)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녹색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 소비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	한국에너지관리공단
8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		품질 실험결과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위 지원대상 외의 인증은 “기타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별표 2 >

해외 인·검증 지원범위

■ 미국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Green Seal(친환경인증)	Water Sense(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미국수질협회 인증)	NSF(미국위생협회인증)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AWWA(미국상하수도협회 인증)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ETL(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SCS(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UL ECV(환경성주장검증)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GSA(미국연방조달청)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너지효율)	Fugitive Emission Test(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유럽

Eco-Labeling(EU환경마크)	CE(유럽공동체마크)	ENEC(유럽규격전기인증)
Seedling(생분해인증제도)	EHEDG(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네덜란드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독일

KTW test 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DIN(독일규격협회)	GS(독일품질안전)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ASTA(영국안전규격)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SI(영국표준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	CPA(영국상업용제품인증)
UKCA(영국 제품 적합인증 마크)	UK REACH(영국 화학물질 등록)	

■ 이탈리아

ACCREDIA(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

■ 프랑스

NF(프랑스표준규격)	ACS(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	--------------------

■ 벨기에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

■ 스페인

AENOR(스페인규격협회)

■ 핀란드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RISE(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노르웨이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일본

JWWA(일본상수도협회)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F-Star 인증(일본친환경규격)

JIS(일본표준규격)

CMJ 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JHOSPA(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위생허가

■ 러시아

GOST(러시아표준규격)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말레이시아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DOSH(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멕시코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IFETEL(멕시코통신인증)

■ 대만

CNS(대만국가표준)

NCC(대만통신기기인증)

■ 태국

TISI(태국공산품규격제도)

■ 브라질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ABESE(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터키

KKDIK(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터키강제인증)

■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L

CPS(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 아르헨티나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

BIS(인도제품인증)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RS(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 인도네시아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중국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MOH(중국수입식품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CCC(중국강제인증)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REACH(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중국 소독제 등록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카자흐스탄

GOST-K(카자흐스탄인증)

■ 캐나다

CSA(캐나다표준규격)

NRCAN-Energy Efficiency(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IC(캐나다산업성)

CCMC(캐나다건축자재인증)

■ 쿠웨이트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콜롬비아

ICONTEC(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폴란드

B mark(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폴란드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필리핀

ICC(필리핀표준규격인증)

ERC(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필리핀환경기술검증)

■ 베트남

CR Mark(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호주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CRS(호주신뢰성인증)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AS(호주규격협회)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Code Mark(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홍콩

HKSM(홍콩제품안전마크)

■ 이라크

COSQC(이라크표준)

■ 이란

ISIRI(이란강제인증)

MOH(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아랍에미리트

ECAS(전자기기인증제도) EQM(아랍에미리트제품적합성마크)

■ 이스라엘

SII(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Ukr SEPRO(우크라이나제품인증)

■ 국제

AEM(장비제조 및 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WHO(세계보건기구)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유라시아적합성인증)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 GCC(중동적합성마크)

※ 단, 상기 외 물기술 인·검증을 신청할 경우는 “기타 인증지원” 으로 신청가능하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별지 1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 성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요 생산품목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중소기업 여부	☐ 중견 ☐ 중소 ☐ 소기업 ☐ 기타	업종	
매출액(직전 연도)	백만 원	고용인원 수	
특허 및 인증	(국내) 특허 건/인증 건 (해외) 특허 건/인증 건	실무담당자 성명(직책)	
인증 취득내용(요약)			
신청분야	(국내) <u>인증제도 또는 품목/인증명</u>		
	(해외) <u>국가명/대상기술 또는 품목/인증명</u>		
사용내용	<u>인증명/인증기관명 또는 시험기관명 간략 요약 (사업비 소요 부분, 신청비, 인증비, 시험비 등)</u>		
총 소요비용	<u>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시험비를 합한 금액</u>		
지원예상액	<u>금 <숫자> 원</u> (<u>금 <글자> 원</u>)	입금계좌	
상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을 약속하며,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장 귀하			

< 별지 2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소요비용 목록							
집행 일자	비목	내역	지출액 (단위 : 원)	사용처	증빙번호	지급방법	비고
합계			1,000,000				
'00.7.5	수수료	신청 수수료	500,000	OO시험원	1	체크카드	
	심사비	현장 심사비	200,000	(주)OO상사	2	계좌이체	
	시험비	시험 분석비	300,000		3		
7.10		x x x			4		
		x x x					
		x x x					
7.20							
8.20							

※ 세부증빙자료(견적서,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증빙사진 등)별도 편철 제철

< 별지 3호 >

기업소개서 및 인증 취득완료보고서

기업소개서			
기업명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품/기술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인원			
구분	2020년	2021년(추정)	2022년(전망)
총 매출액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내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수출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총 종업원 수	명	명	명
특허/프로그램/디자인/환경신기술, 기타 출원·등록 실적			
출원·등록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수
인증 취득 보고서			
취득 인증명			
인증기관	(국내) (해외)		
제품/기술 개요			
용도			
제품/기술 특징점			
추진 내용			
취득일 (진행기간)		총 소요금액	원
인증 활용계획	※ 상품화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계획 등		
물산업 관련성 및 전망	※ 향후 경기도 물산업 기여도, 수출계획 등		
인증 획득 후 기대효과	※ 매출향상, 고용창출 효과 등		
인증 취득 시 문제점, 해결방법			
기타	※ 기타 별첨자료 제출 등		

< 별지 4호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장 귀하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는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기업정보의 항목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업정보의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인증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기업정보 {기업체개요(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등), 재무제표 및 주요시설, 제품, 특허 등 기술, 매출 및 통장사본 등}서류 일체	- 참여기업 선정 절차 이행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

※ 귀사에서서는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의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의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귀사의 일반, 기술,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귀사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사가 제출한 정보는 중앙정부·경기도 감사 및 경기도 의회에 따라 제공하게 되며 이에 대해 제3자 제공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기업명 :

대 표 :

담당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 별지 5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지원사업명			
신청기업명		대 표 자	
본인은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단체(기업)명 대 표 자 (직인)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참여기업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유합니다. 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유기간 : 5년 - 보유사유 : 사업자 선정 및 사업평가 등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중앙정부·경기도 감사 및 경기도의회에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여부 등 - 정보의 이용 목적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감사 수감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귀하가 속한 기관·단체의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별지 6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별지 7호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 ☐ 해외	인·검증명	
미사용 내역			
대상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미사용사유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직전년도 매출3억 원 이상) 아님() ② 기타 (사유명시 :)		
당사는 위와 같이 틀림없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장 귀하			

< 별지 8호 >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			
신청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국내 ☐ 해외	인·검증명	
■ 지원효과성(만족도) 1. 귀사가 본 사업을 접한 지원정보 습득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이메일 ② 홈페이지 ③ 센터방문 ④ 유관기관 공고 ⑤ 기타() 2. 귀사가 금번 지원사업을 통한 전체 만족도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3. 귀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비효과적 ⑤ 아주 비효과 4.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지원과정에 대한 편리성은? ① 매우편리 ② 편리 ③ 보통 ④ 다소불편 ⑤ 아주 불편 5. 본 사업의 지원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자유의견 기재란 (개선방안/추가인증항목 등 본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점)			
- 지원방법, 내용, 지원금액 적정성 등 기타 의견 자유롭게 기재			
■ 타 기업 추천 및 재신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아주 아니다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인식 및 직원 친절도는? 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아주 부정적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향후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된 내용은 경기도 물기업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